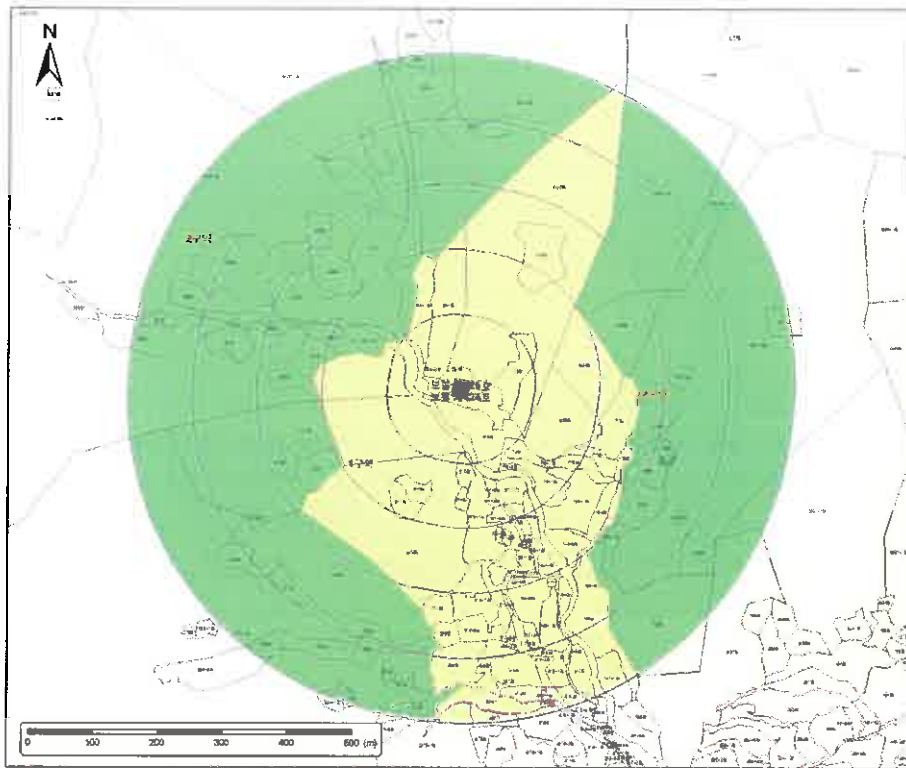


08. 보물 제424호 “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”, 보물 제425호 “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 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		



국가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보물 제424호
예천 청동사 석조여래좌상

보물 제425호
예천 청동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

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
선리 520-1 외

범례

- 국가지정 문화재
- 국가지정 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 ~ 500(m)
- [허용기준구역]
- 1구역
- 2구역

축척 1:4,5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사용은 금합니다